

의학교육인증단 시행세칙

인증제도위원회 운영 시행세칙 <개정 2022.7.6.>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인증단(이하 ‘인증단’) 규정 제7조 4항에 의거하여 인증제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6.>

제2조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평가인증 경험이 있는 자로 인증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평원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평원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업무 진행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① 평가인증 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
- ② 평가인증 업무 발전을 위한 연구
- ③ 평가인증 업무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
- ④ 평가인증 규정 개발
- ⑤ 기타 인증단 발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회의에 보고한다.
- ④ 중요한 건의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인증기준위원회 운영 시행세칙 <개정 2022.7.6.>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인증단(이하 ‘인증단’) 규정 제7조 4항에 의거하여 인증기준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6.>

제2조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평가인증 경험이 있는 자로 인증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평원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평원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업무 진행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① 평가인증 기준의 연구와 개발
- ② 평가인증 기준의 수정과 보완
- ③ 평가인증 기준과 관련된 교육과 홍보
- ④ 평가인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 ⑤ 기타 인증단 발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 부재 시 간사가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회의에 보고한다.
- ④ 중요한 건의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인증관리위원회 운영 시행세칙 <개정 2022.7.6.>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인증단(이하 ‘인증단’) 규정 제7조 4항에 의거하여 인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6.>

제2조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평가인증 경험이 있는 자로 인증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평원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평원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업무 진행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① 중간평가연구보고서 평가 <개정 2018.12.12.>
- ②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 ③ 개선계획서 평가
- ④ 기타 평가인증 질 관리와 인증 유지에 관한 사항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 부재 시 간사가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회의에 보고한다.
- ④ 위원회의 건의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12.)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판정위원회 운영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인증단(이하 ‘인증단’) 규정 제18조 5항에 의거하여 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증단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유관기관 추천 위원, 사회참여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인증단장,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9.6.14.>

2. 유관기관 추천 위원은 대한의사협회 1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2인, 한국의학교육학회 1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인, 한국의학교육협의회 1인, 타 분야 인증기관 1인으로 한다. <개정 2019.6.14.>

3. 사회참여 위원은 학생 대표 1인, 법조계 1인으로 하며, 실행위원회 추천으로 의평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6.14.>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19.6.14.>

제3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해당 대학의 자체평가연구보고서와 방문평가단의 평가 관련 제반 자료 검토

2. 평가대학의 인증유형, 인증기간, 후속조치 등의 결정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이나 대리 출석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평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중요한 건의사항은 의평원에 상정한다.

제5조 (판정 절차) ① 위원회는 각 평가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면평가와 방문평가 관련 결과를 검토한다.

② 검토한 내용에 대해 해당 방문평가단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제2항의 검토 내용을 토대로 해당 대학에 대한 인증유형 및 인증기간을 판정한다.

④ 판정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해당 대학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의평원에 보고한다.

제6조 (서약서) 판정위원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윤리에 관한 시행세칙’과 ‘판정위원회 운영 시행세칙’을 숙지한 후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에 서명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2018. 12. 12.)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 14.)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재심사평가단 운영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인증단(이하 ‘인증단’) 규정 제20조 4항에 의거하여 재심사평가단(이하 ‘평가단’)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5.>

제2조 (조직) ①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2.5.>

② 이사장은 이사 중 1인을 단장으로 임명하고, 위원은 의학교육 전문가 또는 평가인증 경험자로 단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20.2.5.>

③ 재심사를 신청한 대학(이하 ‘신청대학’)을 평가한 위원은 재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재심사평가단은 신청대학의 재심사 과정이 종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0.2.5.>

제3조 (업무)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0.2.5.>

1. 신청대학의 이의 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 판단
2. 판정 결과의 타당성 여부 판단
3. 재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제4조 (회의) ① 단장은 평가단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20.2.5.>

② 평가단의 의사 결정은 전원 합의에 의한다. <개정 2020.2.5.>

제5조 (재심사 절차) ① 신청대학의 평가인증 관련 자료와 재심사 신청사유 자료를 검토한다.

② 신청대학 방문평가단의 평가 관련 제반 사항과 판정 관련 제반 사항을 검토한다.

③ 신청대학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평가단은 재심사 결과보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2.5.>

제6조 (서약서) 재심사 위원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윤리에 관한 시행세칙’과 ‘재심사평가단 운영 시행세칙’을 숙지한 후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에 서명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5.>

부 칙(2018. 12. 12.)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의학교육 평가인증 윤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34조와 제35조에 근거하여 의학교육 평가인증 과정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윤리 강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6.29., 2017.2.8.>

제2조 (기본자세) 평가위원은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평가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평가의 독립성) 평가위원은 독립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며, 어떤 경우에도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 (기밀유지) 평가위원은 평가인증 활동과 관련하여 얻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으며, 특히 본인이나 제3자의 이득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 (개인정보의 보호) 평가위원은 평가인증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평가인증 과정에서 습득한 개인정보 등을 보호해야 한다.

제6조 (부당행위의 금지) 평가위원은 평가인증 과정에서 피평가자에게 청탁, 선전 등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조 (이해관계 평가의 금지) ① 평가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의 대상이 되는 대학의 평가인증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1. 자신 또는 그 직계 가족이 현재 또는 최근에 평가대상 대학의 학생, 교수, 행정담당자, 직원 또는 대리인인 경우

2. 자신 또는 그 직계 가족이 평가대상 대학과 잠정적 협정 및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자신 또는 그 직계 가족이 지난 3년 간 평가대상 대학을 대표하는 직이었던 경우

② 평가위원은 의평원의 요청에 의한 자문을 제외하고는 평가 대상 대학에 평가인증과 관련한 자문을 하지 않는다.

제8조 (금품수수의 금지) 평가위원은 의평원이 지급하는 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평가인증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9조 (서약서) 평가위원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윤리에 관한 시행세칙’을 숙지한 후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에 서명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2018.5.17.>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17.)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방문평가 참관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6조에 근거하여 방문평가 참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9.>

제2조 (참관 신청) 방문평가 참관을 희망하는 국내외 기관은 방문평가 1개월 전까지 사무국에 서면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 (참관에 대한 동의) 방문평가 참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인증단은 참관 배경, 목적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평가대상 대학의 동의를 구한다.

제4조 (참관의 수행) ① 참관자는 방문평가단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대학의 방문평가를 참관할 수 있다.

② 방문평가 참관자에게 방문평가단과 동일한 윤리적 지침을 적용한다. <개정 2016.6.29.>

제5조 (서약서) 참관자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윤리에 관한 시행세칙’과 ‘방문평가 참관에 관한 시행세칙’을 숙지한 후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서명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7.>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17.)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자 의견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32조에 근거하여 평가인증 대상 대학에 대한 제3자 의견이 접수될 경우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9., 2017.2.8.>

제2조 (제출) ① 평가인증 대상 대학에 대한 제3자의 의견은 제시이유와 평가인증기준과의 관련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인증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익명의 의견이나 구두의견은 접수하지 않으며, 입학, 진급, 해고, 징계 등과 같은 사적인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다.

③ 인증단은 의견제시 사항과 수집·확인된 자료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명확한 조사를 위하여 해당 대학의 최고 책임자, 인증단의 조사 위원과 직원, 담당 변호사 등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3조 (조사) ① 인증단은 접수한 제3자의 의견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한다. 제출한 의견과 자료가 해당 대학의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이 평가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빙하기에 미흡할 경우 인증단의 재량으로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② 접수한 제3자의 의견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면 인증단은 접수한 의견과 근거자료, 대학이 답변할 사항을 해당 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의 통보에 대해 해당 대학의 장은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 (판정) ① 인증단은 제3자의 의견과 해당 대학이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한다.

② 해당 대학의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이 평가인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인증단은 판정과 함께 후속조치를 결정하고, 판정결과를 해당 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5조 (답변) 인증단은 제기된 의견이 조사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제3자에게 통보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평가인증 기록물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36조에 근거하여 의학교육 평가인증 과정에서 생성된 각종 자료 및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9., 2017.2.8.>

제2조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대학이 제출한 보고서와 부속 자료, 평가결과 초안, 평가보고서 등 평가인증 과정에서 생성된 책자, 자료, 문서 등은 대외비로 취급하고, 평가인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 (자료 관리) ① 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연구보고서, 학생보고서 등 평가인증을 위해 대학이 제출한 관련 자료(이하 ‘대학 제출 자료’)는 최종평가보고서의 제출 후 의평원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2.>

② 대학 제출 자료는 2부씩 10년간 보존하고, 잔여분은 모두 폐기한다.

③ 대학 제출 자료를 평가인증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 평가인증 절차는 기록하여 10년간 보존한다.

⑤ 10년이 지난 자료는 전자매체로 옮겨 보관할 수 있다.

제4조 (자료 폐기) ① 평가인증 관련 자료를 폐기할 때에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② 대학 제출 자료 이외에 평가위원회가 평가인증 활동을 위해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 메모, 서신 등을 최종 판정 후 30일까지 보관한 후에 파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12.)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평가인증기준 변경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37조에 근거하여 평가인증기준의 변경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9., 2017.2.8.>

제2조 (평가인증기준 변경) ① 평가인증기준은 6년마다 검토하여 개정한다. <개정 2016.6.29.>

② 정기적 검토 이전이라도 평가인증기준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심의를 거쳐 평가인증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절차 및 방법) 인증기준위원회는 평가인증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 기관에 자문하거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인증기준 개정안’을 작성하여 인증단에 제출한다. <개정 2022.7.6.>

제4조 (심의) 인증단의 운영위원회는 ‘평가인증기준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평원에 제출한다.

제5조 (의결) ‘평가인증기준 개정안’은 의평원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실행위원회가 승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6조 (공지) 개정 평가인증기준은 의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변경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38조에 근거하여 규정의 변경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9., 2017.2.8.>

제2조 (규정 변경) ① 인증단 규정은 6년마다 검토하여 개정한다. <2016.6.29.>

② 정기적 검토 이전이라도 인증단 규정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심의를 거쳐 인증단 규정을 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2.8.>

제3조 (절차 및 방법) 인증제도위원회는 규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 기관에 자문하거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인증단 규정 개정안’을 작성하여 인증단에 제출한다. <개정 2017.2.8., 2022.7.6.>

제4조 (심의) 인증단 운영위원회는 ‘인증단 규정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평원에 제출한다. <개정 2017.2.8.>

제5조 (의결) ‘인증단 규정 개정안’은 의평원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별도의 시행일이 지정되지 않은 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개정 2016.6.29., 2017.2.8.>

제6조 (공지) 개정 인증단 규정은 의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필요한 경우 각 대학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2017.2.8.>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서 약 서

본인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평가위원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 윤리에 관한 시행세칙’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본인은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이 시행세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더불어, 의학교육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를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른 승인 없이 어떤 형태로든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은 비밀 유지 서약에 대한 불이행으로 초래될 수 있는 모든 손실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날 짜

성 명

서 명

서 약 서

본인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참관자로 ‘의학교육 평가인증 윤리에 관한 시행세칙’과 ‘방문 평가 참관에 관한 시행세칙’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본인은 참관자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이 시행세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더불어, 의학교육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를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른 승인 없이 어떤 형태로든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은 비밀 유지 서약에 대한 불이행으로 초래될 수 있는 모든 손실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날 짜

성 명

서 명

서 약 서

본인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판정위원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 윤리에 관한 시행세칙’과 ‘판정위원회 운영 시행세칙’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본인은 판정위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이 시행세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더불어, 의학교육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를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른 승인 없이 어떤 형태로든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은 비밀 유지 서약에 대한 불이행으로 초래될 수 있는 모든 손실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날 짜

성 명

서 명

서 약 서

본인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재심사위원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 윤리에 관한 시행세칙’과 ‘재심사평가단 운영 시행세칙’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본인은 재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이 시행세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더불어, 의학교육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를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른 승인 없이 어떤 형태로든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은 비밀 유지 서약에 대한 불이행으로 초래될 수 있는 모든 손실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날 짜

성 명

서 명

의학교육인증단 지침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3조 1항에 근거하여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자체평가연구보고서는 평가인증을 목적으로 대학이 주체가 되어 인증단이 제시한 평가인증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의평원에 제출하는 보고서이다.

제3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자체평가연구보고서에는 최근 2년간 대학에서 시행한 기본의학교육과정,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과 실적, 변화와 개선 사항 등을 기술한다. 단, 불인증의 유예로 인한 재평가 시에는 보고서 제출 직전까지의 모든 개선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9.6.14., 2020.2.5.>
② 대학은 지정된 기간 내에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인증단에 제출한다.

제4조 (보고서 기술 내용) 자체평가연구보고서는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 가이드에 따라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의과대학의 현황, 제3장 자체평가 연구결과, 제4장 종합 및 논의, 부록의 순으로 작성한다.

부 칙(2018. 12. 12.)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 14.)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학생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3조 2항에 근거하여 학생보고서 작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9.>

제2조 (의의)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학생보고서 작성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의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대학 발전에 기여
2. 국제 수준의 평가인증에 부합하는 제도 실시
3. 학생의견 전달과 반영 기회 제공
4. 학생역량 강화
5. 학생의 능동적 평가인증 참여
6.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참고자료

제3조 (내용) 학생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학생 기본 정보
2. 교육과정
3. 교외활동
4. 진로와 상담
5. 복지와 시설: 학습환경과 생활환경
6. 학사운영에 참여 정도 등

제4조 (절차) ① 대학은 평가인증 신청 시 학생대표에게 학생보고서 작성을 요청한다.

② 대학은 학생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③ 학생대표는 학생보고서를 작성한 후 대학에 제출하기 전에 온라인을 통해 인증단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학은 학생대표가 제출한 학생보고서를 별책으로 제작하여 자체평가연구보고서와 함께 인증단에 제출한다. <개정 2018.12.12.>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12.)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중간평가연구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6조에 근거하여 중간평가연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9., 2018.12.12.>

제2조 (정의) 중간평가연구보고서는 인증을 받은 대학이 인증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평가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자체평가연구보고서이다. <개정 2016.6.29., 2018.12.12.>

제3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중간평가연구보고서에는 인증 또는 인증 유지 확인 후 최근 2년간 해당 대학에서 일어난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및 실적, 변화와 개선 사항을 기술한다. (예, 2015년에 인증 또는 인증 유지를 받은 대학은 2017년도에 최근 2년간(2015.3.1.~2017.2.28.)의 자료를 근거로 중간평가연구보고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7.2.8., 2018.12.12.>

② 해당 대학은 중간평가연구보고서를 8월 말까지 인증단에 제출한다. <개정 2018.12.12.>

제4조 (보고서 기술 내용) 중간평가연구보고서는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양식에 따라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대학 현황, 제3장 중간평가 연구결과, 제4장 종합 및 논의, 부록의 순으로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개정 2018.12.12.>

1. 머리말: 중간평가연구보고서를 사실적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음을 포함한다. <개정 2017.2.8., 2018.12.12.>

2. 제1장 서론: 자체평가기획위원회 및 자체평가연구위원회 등 상설 자체평가기구의 조직 구성과 역할 분담, 중간평가에 대한 준비와 계획, 자료수집, 평가실시, 중간평가연구보고서 작성과정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개정 2018.12.12.>

3. 제2장 대학 현황: 행정조직 및 기구표, 연혁, 학생과 교수 및 직원의 현황, 주요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한 최근 2년간의 변화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주요 항목의 변화와 현황 파악을 위한 비교표를 작성한다. <개정 2017.2.8., 2023.2.15.>

4. 제3장 중간평가 연구결과: 자체평가연구보고서와 동일하게 평가인증 기준의 각 평가문항별로 작성하며, 서면평가만으로 평가인증기준의 각 문항에 대한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최근 2년간의 구체적인 실적과 변화를 포함하여 다음의 기준으로 기술한다. <개정 2017.2.8., 2018.12.12.>

가. 평가인증 기준의 각 문항에 대하여 실적, 변화 내용과 질 관리 활동 결과, 기준 충족 여부를 기술한다. 최근 2년간 주요변화가 없거나 변화가 작은 문항도 실적과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 기술한다. <개정 2017.2.8.>

나. 대학이 자체 발전 계획에 따라 추진한 실적이나 주요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 사항, 변화 사항과 그 결과를 관련 문항에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개정 2017.2.8.>

다. 개선계획서에 포함된 문항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한 개선계획과 비교하여 개선 과정, 결과, 효과 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개정 2017.2.8.>

5. 제4장 종합 및 논의: 각 평가인증 기준 영역별로 중간평가 결과를 종합하고 결론을 기술한다.

6. 부록: 각 평가인증 기준의 중간평가 평가 가이드에서 요구하는 근거자료를 부록으로 제시한다. <개정 2017.2.8., 2022.12.14.>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12.)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14.)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15.)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요변화계획서 작성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6조에 근거하여 주요변화계획서 작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9.>

제2조 (정의) 기본의학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주요 교육병원 변경
2. 캠퍼스 이전 또는 분할
3. 소유권 변경
4. 현 입학정원 또는 총 재적생 대비 10%이상 증원 <신설 2017.12.14.>
5. 그 외 기본의학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6.6.29.>

제3조 (작성) ① 주요변화계획서는 제1장 총괄, 제2장 평가인증기준 항목별 변화내용, 제3장 요약의 순서로 작성한다.

② ‘총괄’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변화의 유형
2. 변화의 배경
3. 변화의 구체적 내용
4.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의 변화 개요 및 교육에 미치는 영향
5. 변화에 따른 향후 실행계획(행.재정 계획 포함)

③ ‘평가인증기준 항목별 변화내용’은 주요 변화 유형에 따라 ‘주요 변화 유형별 기술항목[표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한다. 항목별 내용은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인증 또는 인증유지 당시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8.7.12.>

제4조 (절차) ① 대학은 제2조에 정의한 주요 변화가 예상되면 변화 시작 1개월 전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인증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요변화계획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주요변화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에서 기본의학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단은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주요변화계획서의 제출 혹은 보완 요구(1개월 내)
2. 방문평가 실시(3개월 내) <개정 2018.12.12.>
3. 인증기간의 변경
4. 인증유형의 변경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14.)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7. 12.)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12.)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